

의안번호	제 745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360 회)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11월 2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1월 21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

2. 주요내용

- 행정기관 명칭 개정(안 제1조, 안 제3조)
 - “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” → “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”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”를 “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”를 “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시험·조사 및 분석 의뢰서(제3조제1항 관련)

의뢰인	① 성 명 (상 호)		② 생년월일	
	③ 주 소		④ 전 화 번 호 (핸드폰번호)	
⑤ 의뢰 목적				
⑥ 시험·조사 및 분석 종목				
⑦ 검 체 명 및 설 명				
⑧ 현지조사내역				
⑨ 현지조사일정		· ·	부터 까지	(일간)
년 월 일				
의뢰인 (서명또는인)				
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 귀하				
첨부물 : 시험 및 분석 항목별 시료 또는 시험·조사방법 설계서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 접수증(제3조제3항 관련)

접수번호_____	
건 명	
민 원 인	
접 수 일	년 월 일
수 수 료	원정
처 리 기 간	년 월 일 시험·조사 및 분석 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.
년 월 일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	

[별지 제3호서식]

시험·조사 및 분석 성적서(제5조제1항 관련)

성적서 교부 번호 :

시험·조사 및 분석 종목명 :

의뢰인 주소 :

성명 :

상호 :

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험·조사 및 분석 성적서를 교부합니다.

1. 검체내용

시험 등의 종목 (검체명)	의뢰목적	접수일 접수번호
채취장소		

2. 시험결과

년 월 일

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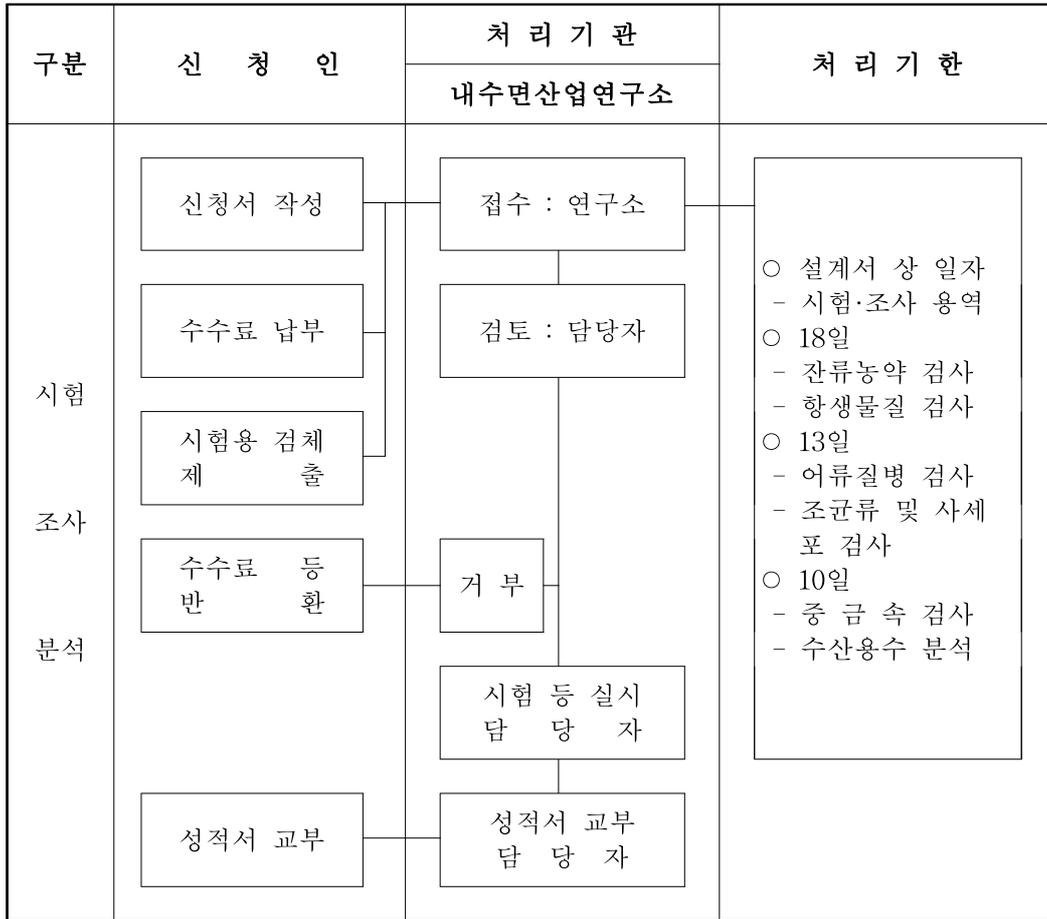
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물에 한하며 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·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와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시험·조사 및 분석 성적서 사본 발급 의뢰서(제5조 제3항 관련)

주 소		상 호 명	
성 명		원본발급 번 호	
시험 등의 종목			
매 수			
<p>상기와 같이 시험·조사 및 분석 성적서의 사본 발급을 의뢰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의뢰인 주 소</p> <p>성 명 (서명또는인)</p> <p>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 귀하</p>			

업무처리 흐름도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</u>에 의뢰하는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) ① <u>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</u>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에 시험·조사 및 분석(이하 "시험 등"이라 한다)을 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필요시 시험·분석용 검체 소요량을 연구소장(이하 "소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u>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 <u>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</u> ----- ----- --.</p> <p>제3조(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) ① <u>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

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

제53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민물고기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(이하 "내수면산업연구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.

제54조(소장) 내수면산업연구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5조(소관사무)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민물고기 양식연구 및 기술지도
2.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교육장(체험전시관) 운영
3.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충주호·대청호·괴산호 등 수계 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타 내수면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

제56조(지소)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,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